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9 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김형동·안철수·박덕흠

유용원 · 김위상 · 구자근

임종득 • 조지연 • 이달희

임이자 · 문금주 · 허성무

임광현 · 강승규 · 이성권

박성민 · 역태영 · 김승수

임미애 • 최은석 • 김원이

이인선 · 임호선 · 강선영

의원(24인)

제안이유

경상북도의 인구 1,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.4명으로 전국 17개 시·도 평균인 2.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,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,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. 특히,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최고 수준임.

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

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,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 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나.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, 지원기금의 조성, 국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, 토지 등의 수용·사용,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 (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).
- 라.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·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 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(안 제13조).
- 마.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 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

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(안 제14조).

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지방간 의료불균형을 시정하고 의료분야에 종사할 전 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경상북도 의료사각 지대의 점진적 해소와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① 경상북도 내 설립되어 있는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. 이 경우 설치된 의과대학(이하 "도내 국립의과대학"이라 한다)은 지역 인구수 및 균형발전, 의료서비스 상황을 고려하여 경 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교사(校舍), 부속병원, 연구시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(이하 "캠퍼스"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「고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권역별 행정구역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조(설치위원회) ①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 학 설치위원회(이하 "설치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
- 1.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 립·시행
- 2. 의과대학을 설치할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의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, 정원에 관한 사항
- 3.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그 명칭 등에 관한 사항
- 4.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공동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- 5.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설치 및 그 위치에 관한 사항
- 6.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기존 도내 의료기관간 연계·협력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- 7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
- 8. 그 밖에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설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그 외 설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, 감독 및 해촉, 기타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입학정원)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총 입학정원을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

하여 정한다.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·연구, 정보의 수집·관리·활용·보호, 의료인의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을 통한 의료인 양성 및 부속병원 설치 등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 영함에 있어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교류·협력의 촉진 및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 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입 학자격·수업연한·교육과정·학위 수여 및 그 밖에 도내 국립의과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.

제2장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

제7조(예산지원의 특례) ① 국가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 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·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

- 를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 지원 및 내용,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지원기금의 조성) ①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.
- 제9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 ① 국가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 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도내 국립의과대학에 무상 으로 양여,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립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,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,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토지 등의 수용·사용)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

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
- 제11조(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) ① 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(이하 "도내 국립대학교"라 한다)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지역의료 강화

- 제12조(지역인재전형) ①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
 - 2.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재학기간 중에 경상북도에 계속 거 주할 것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- 제13조(지역의료과정) ①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경상북도 내 전문병원·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제공체계 및 지리적 특성 등 지역적·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의료과정의 입학 요건, 교육 내용, 지역의료 수련, 전공의 배정,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의료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) ①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도내 국립의과대학 학생 간 계약에 따라 도내 국립의과대학학에서 제13조에 따른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한다.
 -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치, 설치위원회의 구성, 학생의 모집 및 정원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